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4차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임위원회별 자율적 국정감사 분리 실시〉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39호)

2024. 10.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 · 조인철 · 이기현 · 박희승 · 신정훈 · 김남근
김선민 · 서미화 · 박민규 · 김동아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9. 26.

3. 회 부 일 : 2024. 9. 27.

※ 의안번호 : 433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기회는 100일을,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한편,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여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의 심의뿐만 아니라 국정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이 이루어짐. 통상적으로 정기회 기간 중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국정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 법률안 심의에 집중하기 어렵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예산안 심사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정감사를 연중 1회 실시함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운영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분리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u>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u>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조(국정감사) ① -----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u>국회운영위원회</u> 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u> <후단 신설>	⑤ <u>상임위원회는 의결로 제4항-----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서의 변경된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u>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¹⁾에 따라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음.

2012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012. 3. 21. 일부개정, 2012. 5. 30. 시행) 이전에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국정감사가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되어 예산안과 법률안 등 주요 안건을 충실하게 심의하고 정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2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정감사 실시시기를 현행과 같이 조정한 것임.

그런데, 실제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
-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통지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 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표-2] 2012년 이후 국정감사 실시현황

대 별	연 도	실시시기 (기간)
제19대국회	2012	10. 5. ~ 10. 24. (20일)
	2013	10. 14. ~ 11. 2. (20일)
	2014	10. 7. ~ 10. 27. (21일)
	2015	9. 10. ~ 10. 9. (30일)
제20대국회	2016	9. 26. ~ 10. 18. (23일)
	2017	10. 12. ~ 10. 31. (20일)
	2018	10. 10. ~ 10. 29. (20일)
	2019	10. 2. ~ 10. 21. (20일)
제21대국회	2020	10. 7. ~ 10. 26. (20일)
	2021	10. 1. ~ 10. 21. (21일)
	2022	10. 4. ~ 10. 24. (21일)
	2023	10. 10. ~ 10. 27. (18일)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자율적으로 분리·배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상시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정감사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상시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정기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정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국정감사 일정이 분산되는 경우 국정감사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

고 국민의 관심을 통한 국정통제 효과 등이 저하될 수 있는 면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